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정답 및 해설 14~14p 번호 : 14	해설	정답 ③ 지정 취소,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자는 ㉠, ㉡, ㉢, ㉣이다. ㉠ 법제37조의4 제2항제2호 ㉡ ㉢ ㉣ 법제37조의4 제2항제3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(법제37조의4 제2항 제1~3호)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. 1.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.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.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	정답 ④ 지정 취소,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자는 ㉠, ㉡, ㉢, ㉣이다. ㉠ 법제37조의4 제1항제1호 ㉡ 법제37조의4 제1항제2호 ㉢ ㉣ ㉤ 법제37조의4 제1항제3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(법제37조의4 제1항 제1~3호) 제37조 제1항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(이하 “행정제재처분”이라 한다)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. 1.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.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.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
		수정 사유	해설 오류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